

해양범죄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해양경찰 수사교육전문화에 관한 연구

김재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파견 경찰관

A Study on the Maritime Police Investigation Training for Improvement Maritime Crime Investigation Competency

Jae-Woon Kim

Secondment Researcher(KNPA), Korea Institute of Criminology

요 약 우리나라에서 해상에서 발생하는 살인, 강도, 마약밀매, 불법조업 등 해양범죄에 관한 일반적 수사관할권은 해양경찰에게 있다. 해양범죄는 육지에서 발생하는 일반범죄에 비해 희소성, 피해의 대형화, 증거물의 오염가능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를 다루는 수사관들이 평소 담당사건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해양경찰은 범죄수사전문가가 부족하고, 경찰수사연수원 등 일반경찰의 교육기관에 수사교육을 위탁하는 등 자체적인 수사교육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해양범죄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축적하고 수사전문가를 양성한 후, 해양범죄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하여 해양범죄 특유의 교육과정을 통해 해양범죄 수사역량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주제어 : 해양범죄, 해양경찰, 범죄수사, 경찰교육, 과학수사

Abstract In Korea, all investigations of maritime crime such as murder, robbery, drug trafficking, and illegal fishing that have been committed at sea are under the jurisdiction of maritime police. As maritime crimes tend to have more unique cases, cause damage on a larger scale, and be limited to evidence that is possibly contaminated, compared to non-maritime crimes, the cases demand maritime police investigators with a higher level of expertise. However, there is currently a lack of competent investigators in the maritime police, leading to the training of maritime police investigators in training agencies. so many of maritime investigators goes to land police training agency including Korean Police Investigation Academy.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capabilities of maritime crime investigation we must first gather information and data in relation to maritime crimes to foster more investigation specialists, and establish specialized training agencies offering a training course more focused on maritime crimes.

Key Words : Maritime Crime, Maritime Police, Criminal Investigation, Police Training, Scientific Investigation

Received 14 April 2014, Revised 20 May 2014
Accepted 20 June 2014
Corresponding Author: Jae-Woon Kim (Secondment Researcher
(KNPA), Korea Institute of Criminology)
Email: quixote03@hanmail.net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해양경찰은 해양과 관련한 범죄에 있어서 일반적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사범경찰이다. 따라서 해양에서 발생한 또는 해양과 관련이 있는 범죄에 대해 해양경찰은 수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해양범죄는 육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반범죄에 비해서 발생빈도가 낮고, 해상에서 발생할 경우 광활한 범위와 해류의 이동 때문에 증거의 오염가능성이 높고, 해양범죄는 국제성을 띠고 있어 일반범죄에 비해 전문성을 갖추고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교육원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양범죄 수사교육은 해양경찰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해양경찰 수사전문가를 양성하기 어렵고 결국 해양범죄수사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에서 취급한 해양범죄의 실태와 일반범죄와 비교하여 해양범죄의 특성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양범죄 수사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고찰한 후, 해양범죄의 수사력을 제고하기 위해 해양경찰의 전문수사교육 시스템의 개선방안에 대해 중점을 두고 논의하고자 한다.

기존논문들은 주로 해양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 [1][2][3], 해양경찰의 교육훈련 개선방안에 관한 몇몇 논문들[4][5][6]이 있으나, 특히 수사교육에 주안을 두고 연구한 논문은 거의 없다. 이 논문은 해양경찰 전문수사교육기관의 설치 등으로 해양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2. 해양범죄의 실태와 특성

2.1 해양범죄의 발생실태

일반적으로 해양범죄란 그 범죄의 발생장소를 기준으로 해양에서 ‘행해’되거나 ‘시작’되는 또는 ‘해양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8]. 육지에서 발생한 범죄는 일반경찰이 담당하는 것과 같이 해양범죄에 관한 일반적 수사관할권은 해양경찰에게 있다. 해양경찰이 담당하는 해양범죄에는 선상살인이나 폭행, 무면허 어로행위 등 해상에서 발생하는 범죄뿐만 아니라 어촌계급이나 먼세유류관련 경제범죄와 같이 해양과 관련하여 육지에서 발

생한 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포함된다. 2012년도 해양경찰청의 공식통계를 통해 해양범죄현황을 살펴보면, 전체범죄 42,822건 중 형법범은 <Table1>과 같이 12,863건이, 특별법범은 <Table2>와 같이 32,962건이 발생하였다. 형법범 중에는 살인, 절도, 폭력 등 전통적인 범죄보다 먼세유 부정수급, 선용금 편취, 국고보조금 편취 등과 같은 사기사범과 횡령·배임사범이 두드러지게 많다.

<Table 1> 2012 Maritime Crime(Criminal Law)

list of crime	occurrence(cases)	clearance(cases)
murder	10	10
theft	409	314
violent crime	492	444
fraud	8,213	8,022
embezzlement	2,016	2,002
aggravated negligence	446	443
others	1,277	1,227
total	12,863	12,462

* source: [7]

특별법범 중에는 김 양식에 무기염산 사용, 암컷 대개 유통 등의 수산사범과 무면허 선박운항, 선박 승선정원 초과 등의 안전사범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Table 2> 2012 Maritime Crime(Non-Criminal Law)

list of law	occurrence(cases)	clearance(cases)
marine product law	7,389	7,345
marine safety law	4,120	4,108
environmental law	1,187	1,185
international law	280	276
others	19,986	19,904
total	32,962	32,818

* source: [7]

2.2 해양범죄의 유형

해양범죄는 육상에서의 범죄보다 훨씬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해양범죄의 유형은 해양경찰이 처리하는 각종 사건과 사고의 유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해양경찰이 주로 취급하는 사건은 실종 또는 변사사건, 선박 충돌사건, 바다모래 불법채취사건, 밀입국 또는 밀출국사건, 마약류 관련사건, 불법어업행위 단속 등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양한 해양범죄를 해당 법률의 성

격을 구분하여 해양범죄의 유형을 대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상에서’라고 장소적으로 한정되거나 범죄 대상이 ‘선박’으로 한정되는 형법상 해양범죄가 있다. 예를 들면, 해상강도(제340조①), 해상강도살인·치사, 해상강도강간(이상 제340조③) 해상강도상해·치상(제340조②), 선박방화(제164조), 선박침입(제319조), 선박수색(제321조) 등이다.

둘째, 해양관련 행정법상의 처벌규정에 따른 행정법상의 해양범죄가 있다. 예를 들어, ‘수난구조법’, ‘선박법’, ‘어선법’, ‘선원법’, ‘어업자원보호법’, ‘해양환경관리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등 해양 또는 수산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

셋째, 모든 국가의 공통적 이익과 관련되는 국제법상의 해양범죄가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해양범죄는 해적행위, 해상테러, 마약밀거래, 무기나 동식물의 밀수, 권한 없는 구역에서의 항해나 조업, 해양 오염물질 배출 등이 있다. 해상테러나 해적행위에 관한 SUA협약¹⁾이나 선박위해법²⁾을 위반한 범죄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3 해양범죄의 특성

위와 같이 해양범죄는 육지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비해 훨씬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있다. 해양범죄는 육지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비교하여 범죄유형의 다양성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첫째, 해양범죄는 국제성을 띠고 있다. 선박은 선적, 선원의 국적, 화물소유자, 현재지 국가 등 국가 간의 구성이 복잡다양하게 얽혀 있어 관할권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으며, 범죄가 미치는 피해 상황도 여러 나라에 걸치는 국제성을 띠고 있다.

둘째, 해양범죄는 일반범죄에 비해 그 발생빈도가 낮다. 해양범죄의 유형은 일반범죄에 비해 다양하지만, 개별 범죄의 발생빈도는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일선 수사관들의 유사사건 해결경험 빈도 또한 낮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해양범죄는 증거물이 변형되기 쉽다. 해양범죄

는 범행현장이나 사용한 범행도구 등이 바닷물에 영향을 받아 수사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매우 어렵다.

넷째, 해양범죄는 고립성을 가진다. 선박내에서 발생한 해양범죄의 경우에는 고립된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건전후 종사자들이 합의하에 사건을 은폐하거나 진실을 감추려는 경향이 있다.

다섯째, 해양범죄는 일반범죄보다 사회적 여파가 크다. 선박이 대형화, 첨단화됨에 따라 범죄의 규모와 피해의 규모도 함께 대형화되고 있다. 선박은 다수의 사람이 함께 항해·운송작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운송하는 재화의 단위가 크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실·피해액이 크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

여섯째, 해양범죄는 광역성을 띠고 있다. 해양환경은 매우 광활하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활용하는 범죄 장소의 선택과 영역은 매우 넓다.

3. 해양경찰 수사교육 실태와 문제점

이와 같이 해양범죄는 회소성, 광역성, 피해의 대형화, 증거의 오염가능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양범죄를 다루는 수사관들이 평소 담당사건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전문성은 유사사건의 해결경험과 관련 교육에 의해 확보될 수 있을 것인바, 해양경찰의 수사전문교육 개선방안에 참고하기 위해서 우선 해양경찰과 외국의 해양안전기관의 수사교육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3.1 해양경찰의 수사교육 실태

해양경찰관에게 직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해양경찰의 교육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신입교육과정과 차상위계급으로 승진시 이수하여야 하는 기본교육과정, 그리고 기능별 직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교육과정이 있다.

3.1.1 해양경찰 수사요원 교육과정

해양경찰의 수사요원 교육과정은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해양경찰교육원의 수사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3주과정인 수사초급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

1) 1988년 3월 10일 채택한 ‘항해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억제협약(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을 의미한다.

2) SUA협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2003년 제정한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의미한다.

의 3개 전문교육과정으로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제반여건의 부족 등으로 2013년에는 각 과정별로 시험적으로 1주의 단기과정으로 분할하여 운영하였다. <Table3>를 살펴보면, 수사초급과정은 아직 수사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외부기관에 수사교육을 희망하는 자, 수사중급과정은 현재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해양경찰서 등의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위이하의 근무자, 수사고급과정은 수사부서에 3년 이상 근무한 경사 이상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연간 170명의 해양경찰관에게 수사교육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Table 3> Criminal Investigation Course(MPTI)

	elementary course	middle-level course	advanced course
1time student period	60	30	20
frequency	3weeks	3weeks	3weeks
rank	2times	1time	1time
rank	under inspector	under inspector	over assistant inspector
requirements	non-completion officer	criminal investigator	at least 3year career

* source: Korea Maritime Police Training Institute

이 밖에 수사와 관련이 있는 전문교육과정으로는 해상대테러 경호실무과정과 국제해양법전문과정이 있다.

3.1.2 일반해양경찰관 수사교육과정

해양경찰 내부에서의 자체교육은 위에서 설명한 수사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신입교육과정과 기본교육과정 등에서 일부 수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해양경찰관으로 신규채용된 경우 계급별 소정의 기간동안 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경찰관으로 배치된다. 현재 해양경찰의 신입과정 중에서 경사 이하(36주), 경위·경감(12주)의 교육은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하고 있지만 경정(12주)과정과 간부후보생과정(52주)은 일반경찰교육기관인 경찰교육원에 위탁교육하고 있다. 이 중에서 해양경찰교육원의 신입경찰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총 1,260시간 중에서 수사실무, 형사소송법 등 총 30시간을 수사교육에 배정하고 있다. 특히 경감·경위의 신입과정은 총 420시간 가운데 11시간을 배정하고 있다[8-43].

3.1.3 경찰수사연수원 위탁교육과정

해양경찰의 교육은 자체교육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위탁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특히 수사분야에 대한 교육은 위탁교육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2013년 현재 해양경찰청의 수사경찰관은 1,078명이며, 이 중 전문수사교육을 희망하고 있는 인원은 409명이다. 그런데 아직 해양경찰 자체 수사전문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경찰의 수사교육기관인 경찰수사연수원의 각종 교육과정에 위탁하여 교육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해양경찰은 경찰수사연수원에서 과학수사, 디지털포렌식, 산업기술수출, 현장감식, 마약범죄 등 20여개 과정에 참여하여 수사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다.

3.2 외국 해양안전기관의 수사교육

해양경찰의 조직은 각국의 정치와 역사적 배경에 따라 소속기관이나 해당 공무원의 신분에 차이가 있는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해양경비청(Maritime and Coast guard Agency), 미국의 연안경비청(US Coast Guard), 일본의 해상보안청 등은 특수공무원인 연안경비대형, 러시아의 연방국경수비대, 중국의 해상안전국 등은 군인조직형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해양수산부 산하의 경찰공무원이 담당하는 우리나라의 해양경찰과는 차이가 있다.³⁾ 연안경비대형이나 군조직형의 경우 우리나라의 해양경찰과 같이 일반적인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범죄수사의 사건관할이 우리와 다르다[8].⁴⁾ 우리나라와 같이 경찰공무원이 해양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나라는 아르헨티나, 대만 등이 있지만 일반경찰에 예속되어 있거나 형사사법체계에 차이가 있어 시사점을 찾기는 어렵다.

3.3 해양경찰 수사교육의 문제점

3.3.1 해양수사관련 전문가의 부족

해양범죄에 관한 전문수사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 3) 미국의 연안경비사관학교(US Coast Guard Academy)의 경우 후보생과정에 공통과목으로 법집행(law enforcement), 별도로 선발된 수사관에 대한 범죄수사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일본 해상보안대학의 경우 형법, 형사소송법, 해상경찰학, 해상범죄수사론 등을 공통과목으로 교육하고 있다[4]. 하지만 이러한 과목들은 수사에 관한 전문교과목으로 보기는 어렵다.
- 4) 우리나라는 해양경찰관은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의해 일반적 범죄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일 우선시 되는 것이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교관으로 선발하는 것이다. 전문가는 관련분야에 대한 종합적 이해능력과 관련사건의 경험빈도에 의해 양성된다. 그런데 해양범죄는 살인, 절도에서 해양관련 행정법위반범죄까지 매우 다양하고 최종별 사건발생 빈도가 일반범죄에 비해 낮기 때문에 수사전문가를 양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아직까지도 특수성을 갖추고 수사경찰관들을 교육할 수 있는 해양경찰 특유의 수사전문가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3.3.2 해양범죄 수사교육 기획의 부족

뿐만 아니라 해양범죄에 관한 수사전문교육과정의 갯수가 부족하다.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수사전문교육과정은 수사요원양성과정, 수사신문기법과정, 수사서류작성과정, 추적수사과정, 성범죄수사과정, 수사행정관리과정, 채증실무과정 등이 개설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은 일반경찰의 교육과정과 매우 유사한 교과목들로 편성되어 있으며, 해양범죄 특유의 교육과정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3.3.3 해양범죄 전문수사과정 개발의 부족

해양경찰의 교육 현실에 있어서 또 하나 문제점으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은 해양범죄수사 고유의 전문교육과정 이 없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양경찰의 교육에 있어서 신입과정의 경우 전체과정 중에서 일부 교과목을 수사관련 교과목으로 배정하여 교육을 시키고 있다.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수사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3주과정인 수사초급과정, 수사중급과정, 수사고급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과정에서 편성된 교과목을 살펴 보면, 일반경찰의 경찰수사연수원의 수사요원양성과정 등 일반수사요원과정을 모방하여 교과목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4. 해양경찰의 수사교육전문화방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양범죄는 육상에서 발생하는 일반범죄에 비해 범죄의 국제성과 광역성, 범죄유형별 낮은 발생빈도, 고립으로 인한 증거인멸 우려,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

기술이나 표준절차(SOC)를 반복적으로 교육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박, 경찰기관 등에서의 현장직무교육(OJT)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형사법, 국제법, 디지털기법, 외국어 등 다양한 유형의 학문과 지식을 함께 교육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교육이 적절하다. 여기서는 집합교육을 중심으로 해양범죄의 특수성에 비추어 기존의 교육시스템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4.1 해양범죄수사 전문교수요원의 양성

교육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능력있고 전문성있는 강사를 선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해양경찰은 일반경찰에 위탁교육을 통해 수사교육을 진행한 전통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하려는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제라도 해양경찰의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수사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수사전문가 양성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에는 2012년부터 일반경찰의 전문수사관 제도를 본받아 해양경찰 전문수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경찰에서 운영하는 전문수사관 제도는 해양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라기보다는 일반적 범죄수사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인증하기 위한 제도라는 느낌이 강하다.⁵⁾ 해양범죄에 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해양범죄 전문수사관을 강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양의 특수한 분야에 관한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① 인신매매, 밀출입국 사건, ② 불법조업 외국어선 사건, ③ 해적, 해상테러 사건 수사 및 협상분야, ④ 마약밀매, 밀수사건, ⑤ 해양 디지털포렌식, ⑥ 유지문(油指紋) 분석, ⑦ 해상 동식물 분석 분야의 전문가를 인증하고 양성하여야 한다.

4.2 해양범죄관련 자료와 정보의 축적

일반경찰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에 있어서 경찰관이 작성한 대부분의 수사서류가 경찰청에 남아 있지 않고, 검찰로 송치되는 현실에서 해양범죄에 관한 자료를 축적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많은 사건을 처리하다보면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사건유형

5) 해양경찰 전문수사관 제도는 매년 1회 수사공통, 강력, 지능경제, 해양사고, 과학수사의 5개 분야에 대해 지방경찰청별로 지원을 받아 평가시험과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문수사관으로 인정하고 있다(해양경찰청 훈령 제968호, 해양경찰관 전문수사관 운영규칙).

이 있고, 이 들 유형을 세밀히 살펴보면 사건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해역별 동식물 DNA 샘플이나 선박 종류와 등록번호, 양식장, 어구, 등 필요한 영역에 있어서 해양범죄 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수사와 수사교육에 활용한다면 해양범죄의 해결에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3 해양범죄수사관련 전문교육과정의 신설

해양범죄에 관한 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교육은 국제화, 과학화, 전문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한다. 참고할 선행사례가 없는 해양경찰의 초기단계에서 교육 과정의 개편에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제화, 과학화, 전문화에 방향을 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문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한다면, 해양경찰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4.3.1 해양수사요원양성과 수사지휘과정

수사요원양성과정은 현재 초급, 중급, 고급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요원의 신규수요가 많지 않은 현실에서 의욕이 앞서 이와 같이 차별적인 과정을 다양하게 개설한다면 교육수요자 확보, 교수요원 확보, 과정별 강의의 차별성 등을 감당할지 의문이다. 따라서 우선은 수사요원양성과정과 수사지휘과정으로 구분하여 교육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과정운영 또한 육지·해양 모두에 공통적인 교과목을 우선 이수할 수 있도록 일반경찰과 협의하여 해양경찰교육기관에서는 해사법, 해양경비법, 해양행정법규, 해양관계 국제법 또는 해양범죄에 특수한 수사기법을 중심으로 일반경찰수사교육에 보충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3.2 국제성 해양범죄수사과정

우리나라에서 해양은 중국, 일본 등 인접국과 사실상의 국경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국제법, 국제조약 등 국제성범죄에 대한 실무적인 대응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해양경찰은 국제형사법, 인접국과의 조약, 출입국관리법, EEZ법 등 해양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국제성 해양범죄를 처리할 수사관을 양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제성 해양범죄수사 과정에는 국제형사법, 국제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 불

범조업외국어선 수사방법, 밀수 및 밀출입국 사범 수사, 해상을 통한 마약밀매사건 수사, 해적이나 해상테러사범 수사, 출입국 규제요령과 같은 교과목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4.3.3 해양과학수사과정

과학수사에 있어서도 해양경찰에 특수한 과학수사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해양경찰의 분야별 과학수사교육은 대부분 일반경찰 교육기관인 경찰수사연수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인 과학수사기법은 경찰수사연수원 위탁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더라도 일반경찰에서 할 수 없는 해양범죄 특유의 과학수사기법에 대해서는 해양경찰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공유하여야 한다. 해양범죄에 특유한 과학수사기법은 침몰한 선박이나 바다에 추락한 항공기 등의 사고조사에 필요한 수증과학수사기법, 선박용 통신장비에 대한 해양디지털 포렌식 수사, 선박사고조사 등이 있다. 이에 따라 해양과학수사과정은 유지문(oil fingerprinting) 분석, 선박교통사고조사, 선박 화재감식, 수증변사체 및 표류 동물시체 감식 방법, 해양 동식물을 활용한 장소확인, 해상강력사건 현장초동조치요령, 해상 선박 충돌사고 조사 등의 교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4.3.4 해양 디지털포렌식 수사과정

항해술이 컴퓨터와 결합하면서 선박에 유·무선 정보통신장비들이 활용되어 이제 컴퓨터시스템이 없는 항해는 생각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아직도 해양경찰의 과학수사에서 디지털 포렌식은 미개척 분야로 남아 있다[9]. 해양경찰의 디지털포렌식 기법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반경찰과 같이 IT분야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디지털포렌식센터 등 관련 조직을 확대·개편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우선 해양범죄수사에 있어서 필요한 디지털포렌식 분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선박은 대부분 항해, 육상과의 교신에 필요한 유·무선 네트워크를 구비하고 있다. 따라서 선박에는 위성항법장치(GPS), 선박자동식별장치(AIS)⁶⁾, 항해자동기록장치(VDR)⁷⁾, 전자

6)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의 약자이다. 선박간 또는 육상관제소간에 선박의 위치정보 등을 자동 송수신하는 시스템이다.

7) Voyage Data Recorder의 약자이다. 항공기 블랙박스과 같이 항해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도입된 장비이다.

해도(ECDIS)⁸⁾ 등을 구비하고 있다. 특히 범죄사건의 수사에는 GPS플로터⁹⁾의 항적(航跡)자료 분석기법, VDR 자료분석, 교신내용에 대한 음성분석 등의 디지털 수사 기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해양 디지털포렌식 수사과정에는 항적자료분석기법, 음성분석, 스마트폰 위치 추적 및 통화기록 분석, CCTV판독 및 현장사진 분석 등의 교과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4.4 해양범죄수사 전문교육기관의 설치

해양범죄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 수사요원에 대한 전문수사교육을 통해 수사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교수요원 2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해양경찰교육원의 정보수사학과 역량으로는 늘어나고 있는 수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해양경찰의 수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별도의 수사교육 전담부서가 필요하다. 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대규모 수사교육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것은 현재 해양경찰의 역량에 비추어 다소 무리가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중국적으로는 별도의 해양범죄 수사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한다고 할 지라도 과도기적으로 수사교육부서를 해양경찰청 내 유관기관에 별도의 부서로 설치하여 수사교육의 역량을 점진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 두 가지 방안 중의 하나를 택해 교수요원의 강의능력 등 교육역량을 향상시킨 후 중국적으로는 해양범죄에 관한 전문수사교육기관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8].

4.4.1 해양경찰교육원내 설치방안

현재 전남 여수에 위치하고 있는 해양경찰교육원내에 해양범죄반 전담하는 해양범죄수사교육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기존의 교수요원, 교실, 교육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고 넓은 운동장 등 교육환경은 우수하지만, 전문능력을 갖춘 우수한 강사를 섭외하기 어렵고 해상경비, 함정실무 등 다른 업무에 비해 범죄수사를 별도로 더 중요하게 취급해야할 명분을 찾기 어려워 해양범죄수사교육

역량이 강화되기 어려운 약점이 있다.

4.4.2 해양경찰연구소내 설치방안

해양경찰연구소는 해양경찰 업무지원 및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활동을 통해 해양경찰의 선진화, 과학화, 전문화에 기여하고자 2007년에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으로 출범하였다. 해양경찰연구소는 과학수사연구팀, 유출유분분석팀, 배출물연구팀 등 감정 및 연구부서를 통해 해양범죄에 관한 과학수사지원과 해양오염물질에 대한 감식활동을 수행하고 있다[10].

이 해양경찰연구소에 해양범죄수사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면, 해양범죄 관련 과학수사전문가나 가까운 수도권에서 우수한 강사를 섭외하는 등 강사섭외에 이점이 있다. 또한 해양경찰교육원이 여수로 이전하기 전 현재 충남 천안에 소재하고 있는 해양경찰연구소의 건물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교실, 교육기자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양경찰연구소는 교육기관이 아닌 연구 및 감정기관이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 편성, 교육생 지도, 강사섭외 등 교육행정을 위한 별도의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4.5 제도적·법적 개선방안

우리는 주로 육상에서 발생하는 전통적인 범죄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정부에서도 전통적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시켜왔다. 해양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의 수사관을 증원하고, 과학수사 또는 수사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해양수산분야의 특별사법경찰을 해양경찰에서 전담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확보한다면,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해양에서 발생하거나 해양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모든 범죄에 대해 해양경찰은 충분한 수사력을 가지고 진실을 규명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해양경찰의 범죄수

8) 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의 약자이다. 종이해도 대신 컴퓨터로 해도정보를 표시하는 장치이다.

9) GPS plotter, 소형선박이나 어선에 위치, 기상, 수심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자동으로 항적을 기록하는 장치이다.

사력 제고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해양경찰 수사전문교육이다. 해양범죄나 일반범죄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수사기법은 경찰수사연수원 등 일반경찰교육기관에 의존할 지라도 해양범죄에 특수한 문제에 있어서는 해양경찰의 전문적 수사역량이 제고되어야 한다. 수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사경험, 관련 연구, 전문교육이 필요하다. 전문수사교육에 있어서 해양경찰은 내부수사관, 외부의 특별사법경찰관 등 교육수요를 적절히 파악하고, 해양범죄의 특수성을 살려 진문강사를 육성하며, 해양범죄에 특수한 분야의 전문교육과정을 개발하여야 한다. 하지만, 특정한 분야에 대한 조직내외의 사회적 이슈를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교육기관의 설치가 바람직하다. 준비없이 독립적인 교육기관을 설치하기보다는 기존의 해양경찰학교나 해양경찰연구소를 활용하여 점진적으로 수사교육역량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다.

최근 해양경찰은 충남 천안에 경정급을 소장으로 하는 해양경찰수사연수소를 설치하였다[11]. 이는 해양경찰교육원의 교육행정인력과 해양경찰연구소의 연구인력을 적절히 활용하고, 강사섭외 등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해양경찰수사연수소의 출범목적은 해양범죄 수사역량 제고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수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는 것인 만큼 조직의 외형적 확대보다 해양범죄에 관한 과학적 수사기법을 발전시켜 해양범죄사건의 진실규명에 한발 더 나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REFERENCES

[1] Ju-Sang Park, Dong-Kyun Park, A Study on Effective Responses of International Maritime Crime by Korea Coast Guard,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Vol. 7, No. 3, pp.65-88, 2010.

[2] Yeong Tae Son (2013), The Research on the Confrontation Realities of People's Livelihood Crimes and Improvement Schemes in Korea Coast Guard, Vol. 3, No 1, pp.93-122, 2013.

[3] Ho-Rae Roh, Pattern Analysis of Maritime Crime

and Countermeasures, Korean Journal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No. 42, pp.11-46, 2011.

[4] Jong-Hwui Yun, Seung-Gi Gug, Eun-Bang Lee, Jae-Dong Lim, Sung-Jung Ko,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ducational Systems of Korea National Maritime Police Agenc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time Environment & Safety, Vol 9, No. 1, pp.79-87, 2003.

[5] Ho-Dae Cho, Improvement of Korea Maritime Police Training, Korean Journal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No. 15, pp.199-225, 2003.

[6] Sang-Yeol Lee, A Study on Developmental Plan of Korea Coast Guard Education & Training System,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Vol. 8, No. 3, pp.25-46, 2008.

[7] Korea Coast Guard, 2013 White Paper, Incheon: Korea Coast Guard, 2003.

[8] Eui-Gi Shin, Kyung-Lyul Lee,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Maritime Police Investigation-Specialized Training Agency, Korea Coast Guard Research Project, Korea Institute of Criminology, 2013.

[9] Gyu-An Lee, A Study on Maritime Digital Forensic with Necessity, th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3, No 4, pp.215-220, 2008.

[10] <http://www.kcg.go.kr/research/>.

[11]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319_0012797460&cID=10807&pID=10800.

김재운(Kim, Jae-Woon)



- 1991년 3월 :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사)
- 2005년 2월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법학석사)
- 2012년 2월 ~ 현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파견 경찰관(경찰학박사)
- 관심분야 : 범죄예방, 해양경찰 등

· E-Mail : quixote03@hanmail.net